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053

2024.11.22.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1.22.) 상정, 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태균)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연구원을 설립하고,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서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출연 사무명 : 서울연구원 출연

### 2.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 2) 추진 필요성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시책연구기관으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 교통, 안전, 경제, 복지,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시정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3. 출연 사무내용

- 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  
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4)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6)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

#### 4. 출연 기관 개요

##### 가. 연 혁

- ' 92. 1. 15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제정
- ' 92. 7. 14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설립
- ' 92. 9. 23 초대 최상철 원장 취임
- ' 92. 10. 1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개원
- ' 03. 1. 27 현 청사(서초동 인재개발원 내) 이전
- ' 12. 7. 26 서울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 17. 9. 21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 ' 23. 11. 1 통합연구원 출범 \*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 ' 24. 2. 23 제18대 오균 원장 취임

##### 나. 소재지

- 본 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역삼별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05 YK빌딩
- 정동별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10

## 다. 위치도



## 라. 규모

- 조 직 : 원장, 부원장, 감사실, 3본부, 11실, 5센터

- 인 력 : 정원 301명 / 현원 302명

(2024년 7월 22일,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연구직	일반직	공무직
정원	301	1	213	71	16
현원	302	1	214	71	16
과부족	1	-	1	-	-

## 마. 시설현황

- 본관 : 지상5층~지하1층 / 연면적 8,467.83m<sup>2</sup>
  - ▶ 시유재산 무상사용 : ' 21.12.27. ~ ' 26.12.26.(5년)
- 정동 별관 : 지상4층~지하1층 / 연면적 1,793.87m<sup>2</sup>
  - ▶ 시유재산 무상사용 : ' 24.3.22. ~ ' 29.3.21.(5년)
- 역삼 별관 : 지상8층(1,006.61m<sup>2</sup> ), 지상1층(110.08m<sup>2</sup> )
  - ▶ 민간건물 임차 : ' 21.5.1. ~ ' 26.4.30.(5년)

##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가. 출연금액(안) : 39,172백만원

나. 산출근거(안)

(단위 : 천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계	60,792,924	100%	계	60,792,924	100%
1. 일반사업계정	53,192,924	87.5%	1. 일반사업계정	53,192,924	87.5%
<b>가. 출연금</b>	<b>39,172,170</b>	64.4%	<b>가. 연구사업</b>	6,976,275	11.5%
<b>나. 자체수입</b>	<b>14,020,754</b>	23.1%	1)연구과제 수행	6,887,060	11.3%
1)수탁사업 계정전입금	1,178,000	1.9%	2)연구실 운영	89,215	0.1%
2)출판물 등 판매수입	40,000	0.1%	<b>나. 경영사업</b>	<b>12,317,546</b>	20.3%
3)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000,000	1.6%	<b>다. 인건비</b>	<b>33,699,103</b>	55.4%
4)이월금	1,712,340	2.8%	<b>라. 예비비</b>	<b>200,000</b>	0.3%
5)내부유보금	10,090,414	16.6%			
2. 수탁·협약사업계정	7,600,000	12.5%	2. 수탁·협약사업계정	7,600,000	12.5%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2025년도 서울시 세출예산에 서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2. 서울연구원의 현황

-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주요 시책 과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분석 및 정책 연구와 개발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됨.
- 서울연구원의 조직 및 인력은 동 동의안의 제출시점인 2024년 8월 기준으로 감사실, 3본부, 11실, 5센터<sup>1)</sup>에 연구직 214명을 포함한 정규인력 302명(현원)으로 구성됨.

#### < 서울연구원 인력 현황 >

(2024. 8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원장	연구직					연구지원직			
			소계	선임 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소계	일반직	전문직 <sup>2)</sup>	공무직
정원	301	1	213	115			98	87	71	-	16
현원	302	1	214	34	87	5	88	87	71	-	16
과부족	1	-	1	11			△10	-	-	-	-

※ 정원외직원 : 71명(초빙연구원 9명, 위촉연구원 57명, 연구보조원 5명)

- 1) 연구원의 조직은 원장, 부원장, 감사실, 3본부(포용도시연구본부, 미래공간연구본부, 지속가능연구본부), 11실(미래융합전략실, 연구기획실, 경영지원실, 경제경영연구실, 도시사회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도시교통연구실, 디지털도시연구실, 안전인프라연구실, 도시환경연구실, 기후변화연구실), 5센터(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약자동행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탄소중립센터, 기술실증센터)로 구성됨.
- 2) 양 연구원 통합으로 전문직이 일반직에 통합되었음.

-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은 1,371건이며, 올해는 8월을 기준으로 총 257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목표 275개 대비 93% 수행).

### < 서울연구원 연도별 연구 수행<sup>3)</sup> 현황 >

(2024. 8월 기준, 단위 : 건)

연도	계	출연금 수행연구(舊 자체연구)						협력연구	수탁연구
		소계	정책	기초	현안	수시	시책		
총계	1,371	1,061	296	156	370	215	24	50	260
2024.8월	257	216	88	18	98	-	12	-	41
2023년	263	212	62	21	117	-	12	-	51
2022년	323	271	52	43	103	73	-	7	45
2021년	244	178	48	43	21	66	-	15	51
2020년	284	184	46	31	31	76	-	28	72

#### ※ 연구과제 유형

##### ▶ 출연금 수행연구(舊 자체연구)

- 정책 : 서울시정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회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외부의 학계, 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
- 기초 : 연구원 역량강화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한 연구
- 현안 : 당면과제 해결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수시연구 및 서울시 현안검토 요청,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수시 검토 연구 등
- 시책(신설) : 서울시의 지속적인 학술용역사업 중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 ▶ 수탁연구 : 외부와 체결한 용역계약 또는 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 한편 서울연구원은 서울기술연구원과의 유사·중복성 해소와 정책·기술 분야의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11월 1일에 통합되었음.

### 3. 서울연구원 출연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sup>4)</sup> 및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제1항<sup>5)</sup>에

3) 2023년 연구수행 개편\* : 자체연구(정책·기초·현안·수시·협력) → 출연금 수행연구(정책·기초·현안·시책)

\* 기존 현안연구+수시연구 ⇒ '현안연구'로 통합, 협력연구 ⇒ '정책연구'에 흡수

4)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

따라 서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음.

- 서울연구원은 설립 이후 주요 시책과제의 개발, 각종 연구사업의 수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통합 이후에는 도시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해결 모색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응전략 수립 등 융복합 연구 조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최근 5년간 출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336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다가 2022년 구정연구단 사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260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 11월 통합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5년 출연금 추정액은 391억 7천 2백만원임.

### < 서울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동의안	예산안	동의안	예산안	동의안	예산안	동의안	예산안	동의안	예산안	동의안	예산안
35,863	33,640	34,524	32,474	27,436	26,057	26,057	31,600	43,155	39,930	39,172	30,647

- 그러나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울시(예산담당관)의 조정을 거치면서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해 제출된 서울연구원 출연금은 306억 4천 2백만원으로 동 동의안에 명시된 금액보다 85억 3천만원이 감액됨.
-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동 동의안이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에 제출되었기 때문임.

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5)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왔던 것으로, 시의회의 출연 동의안의 심의는 궁극적으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출연 사업의 효과성, 출연 규모의 적정성, 법적 근거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연 여부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출연 규모에서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출연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시의회의 심의권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동 출연 동의안을 비롯한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동 동의안의 출연금은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심의 확정분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수정안 요지**

##### **가. 수정이유**

- 동의안의 내용 중 출연금액과 산출근거를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맞춰 수정함.

##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동의안의 내용 중 출연금액 39,172백만원을 예산안에 맞춰 30,641,900천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산출근거를 수정함.

## Ⅶ.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53
----------	---------

제안년월일 : 2024년 11월 22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의안의 내용 중 출연금액과 산출근거를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맞춰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동의안의 내용 중 출연금액 39,172백만원을 예산안에 맞춰 30,641,900천원으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산출근거를 수정함.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주요내용 중 출연금액 및 산출근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출연금액(안) : 30,641,900천원

2) 산출근거(안)

(단위 : 천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계	52,262,654	100%	계	52,262,654	100%
1. 일반사업계정	44,662,654	85.5%	1. 일반사업계정	44,662,654	85.5%
<b>가. 출연금</b>	<b>30,641,900</b>	<b>58.6%</b>	가. 연구사업	6,202,915	11.9%
나. 자체수입	14,020,754	26.8%	1)연구과제 수행	6,107,375	11.7%
1)수탁사업 계정전입금	1,178,000	2.3%	2)연구실 운영	95,540	0.2%
2)출판물 등 판매수입	30,000	0.1%	나. 경영사업	6,738,536	12.9%
3)고유목적사업 준비금	500,000	1.0%	다. 인건비	31,621,203	60.5%
4)이월금	1,374,443	2.6%	라. 예비비	100,000	0.2%
5)내부유보금	10,938,311	20.9%			
2. 수탁 <del>협약</del> 사업계정	7,600,000	14.5%	2. 수탁 <del>협약</del> 사업계정	7,600,000	14.5%

# 수정안 조문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1. 제안이유 가. ~ 나. (생략)						1. 제안이유 가. ~ 나. (동의안과 같음)					
2. 주요내용 가. ~ 라. (생략)						2. 주요내용 가. ~ 라. (동의안과 같음)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출연금액(안) : <u>39,172백만원</u> 2) 산출근거(안)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출연금액(안) : <u>30,641,900천원</u> 2) 산출근거(안)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계	60,792,924	100%	계	60,792,924	100%	계	52,262,654	100%	계	52,262,654	100%
1. 일반사업계정	53,192,924	87.5%	1. 일반사업계정	53,192,924	87.5%	1. 일반사업계정	44,662,654	85.5%	1. 일반사업계정	44,662,654	85.5%
<b>가. 출연금</b>	<b>39,172,170</b>	<b>64.4%</b>	가. 연구사업	6,976,275	11.5%	<b>가. 출연금</b>	<b>30,641,900</b>	<b>58.6%</b>	가. 연구사업	6,202,915	11.9%
나. 자체수입	14,020,754	23.1%	1) 연구과제 수행	6,887,060	11.3%	나. 자체수입	14,020,754	26.8%	1) 연구과제 수행	7,447,760	11.7%
1) 수탁사업 계정전입금	1,178,000	1.9%	2) 연구실 운영	89,215	0.1%	1) 수탁사업 계정전입금	1,178,000	2.3%	2) 연구실 운영	95,140	0.2%
2) 출판물 등 판매수입	40,000	0.1%	나. 경영사업	12,317,546	20.3%	2) 출판물 등 판매수입	30,000	0.1%	나. 경영사업	7,853,832	12.9%
3) 고유목적사 업 준비금	1,000,000	1.6%	다. 인건비	33,699,103	55.4%	3) 고유목적사 업 준비금	500,000	1.0%	다. 인건비	31,621,203	60.5%
4) 이월금	1,712,340	2.8%	라. 예비비	200,000	0.3%	4) 이월금	1,374,443	2.6%	라. 예비비	100,000	0.2%
5) 내부유보금	10,090,414	16.6%				5) 내부유보금	10,938,311	20.9%			
2. 수탁 협약사업계정	7,600,000	12.5%	2. 수탁 협약사업계정	7,600,000	12.5%	2. 수탁 협약사업계정	7,600,000	14.5%	2. 수탁 협약사업계정	7,600,000	14.5%
3. 참고사항 가. ~ 다. (생략)						3. 참고사항 가. ~ 다. (동의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호	2053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연구원을 설립하고,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분석,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 사무명 : 서울연구원 출연
-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 2) 추진 필요성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시책연구기관으로, 서울의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 교통, 안전, 경제, 복지, 문화,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시정 주요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다. 출연 사무내용

- 1)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2)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 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 4) 시 행정 및 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6)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

## 라. 출연 기관 개요

### 1) 연 혁

- '92. 1. 15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제정
- '92. 7. 14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설립
- '92. 9. 23 초대 최상철 원장 취임
- '92. 10. 1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개원
- '03. 1. 27 현 청사(서초동 인재개발원 내) 이전
- '12. 7. 26 서울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17. 9. 21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
- '23. 11. 1 통합연구원 출범 \*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 '24. 2. 23 제18대 오균 원장 취임

## 2) 소재지

- 본 관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역삼별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05 YK빌딩
- 정동별관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10

## 3) 위치도





#### 4) 규 모

- 조 직 : 원장, 부원장, 감사실, 3본부, 11실, 5센터
- 인 력 : 정원 301명 / 현원 302명

(2024년 7월 22일,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연구직	일반직	공무직
정원	301	1	213	71	16
현원	302	1	214	71	16
과부족	1	-	1	-	-

#### 5) 시설현황

- 본 관 : 지상5층~지하1층 / 연면적 8,467.83m<sup>2</sup>
  - ▶ 시유재산 무상사용 : '21.12.27. ~ '26.12.26.(5년)
- 정동 별관 : 지상4층~지하1층 / 연면적 1,793.87m<sup>2</sup>
  - ▶ 시유재산 무상사용 : '24.3.22. ~ '29.3.21.(5년)
- 역삼 별관 : 지상8층(1,006.61m<sup>2</sup>), 지상1층(110.08m<sup>2</sup>)
  - ▶ 민간건물 임차 : '21.5.1. ~ '26.4.30.(5년)

####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출연금액(안) : 30,641,900천원

2) 산출근거(안)

(단위 : 천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계	52,262,654	100%	계	52,262,654	100%
1. 일반사업계정	44,662,654	85.5	1. 일반사업계정	44,662,654	85.5
가. 출연금	30,641,900	58.6	가. 연구사업	6,202,915	11.9
나. 자체수입	14,020,754	26.8	1) 연구과제 수행	6,107,375	11.7
1) 수탁사업 계정전입금	1,178,000	2.3	2) 연구실 운영	95,540	0.2
2) 출판물 등 판매수입	30,000	0.1	나. 경영사업	6,738,536	12.9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500,000	1.0	다. 인건비	31,621,203	60.5
4) 이월금	1,374,443	2.6	라. 예비비	100,000	0.2
5) 내부유보금	10,938,311	20.9			
2. 수탁 협력사업계정	7,600,000	14.5	2. 수탁 협력사업계정	7,600,000	14.5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4)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